

##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9. 23.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7. 9. 23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5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(97. 9. 27.) 상정 및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환)

가. 제안이유

수도법 제19조의2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을 위하여 “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”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을 위하여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를 구성하고,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,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위원회는 수질전문가,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2,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6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
-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표,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등을 통한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새로 구성코자 하는 제정조례로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없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<p>○ 동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수도법이 94년에 제정되었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?</p> <p>○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?</p>	<p>○ 수도법상에 동위원회를 시·도에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다가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가 97년 6월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는 것임</p> <p>○ 수도법 제19조의2 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 신설과 동시에 효력을 잃은 것이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할 것임.</p>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-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제5조제2항중 “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”를 “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,”로 조문 수정

7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8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10. 첨부서류

- 가.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- 나. 수정안 대비표 1부

###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319호
의결년월일	97. 9. 30. (제55회)

제안년월일:97. 9. 27.

제안자:건설교통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조례내용과 부조화된 조문 정정

#### 2. 주요골자

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 제5조제2항중 “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”를 “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,”로 조문 수정

###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2항중 “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”를 “개최하고,”로 한다.

#### 수정안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5조(회의 및 의사) ①(생략)	제5조(회의 및 의사) ①(제정안과 같음)
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<u>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</u> 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	② ..... ..... <u>개최하고</u> ,..... .....
③(생략)	③(제정안과 같음)

##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

의안번호	제319호
의결년월일	97. 9. 30. (제55회)

제출년월일:97. 9. 23.

제 출 자:부천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수도법 제19조의2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을 위하여 「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」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을 위하여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를 구성하고,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,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 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위원회는 수질전문가,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안 제3조제1항)
- ※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
- 다.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(안 제10조제1항)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

- 수도법 제19조의2
- 수도법시행령 제23조의2 ~ 수도법시행령 제23조의6
-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 “별지1” 상하수관리과 제11호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을 위하여 수도법 제19조의2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2. 시장(수도사업자)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
3. 기타 수돗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장, 의회, 관련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.

1. 수질전문가(대학교수, 수질 및 환경연구소, 환경단체 임원 등) 3인 이내
2. 소비자 3인 이내
3. 관계공무원 4인 이내

제4조(임기 및 직무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등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 및 의사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·전문가 또는 소비자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2.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(6월 이상)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3. 기타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  
한 때

②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등)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수과장이,  
서기는 수질계장이 된다.

제9조(수당등)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,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 
에 대하여는 “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정기검사 및 자문) ①위원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 
공표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  
장(수도사업자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) 수돗물의 정기검사는 「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 
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